#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 연혁** 2024.10.02 전부개정

광운대학교 총학생

光云大學校 總學生會



# 목 차

# 총학생회칙

전			문	1
총			칙	2
학	생 충	5	회	4
학	생 총	투	표	6
전	체 학 생 대 표	자 회	의	8
확	대 운 영 위	의 원	회	
중	앙 운 영 위	의 원	회	
총	학 생 회	장	단	
총	학생회중앙집	행 위 원	회	
비	상 대 책 위	의 원	회	
단	과 대 학	학 생	회	21
학	부학생회, 학	과 학생	회	22
총	동 아 리 약	면 합	회	23
졸	업 준 비 위	의 원	회	24
재			정	
사	무장회의 및	지 분 회	의	
선			거	27
법			제	
부			칙	31

# 전 문

광운대학교 총학생회는 참빛의 학훈 아래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빛이 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자유롭고 비판적인 학문 사상 연구를 통한 진리 탐구와 창조적인 대학 문화를 창달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역동적 실천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을 그 사명으로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반독재 투쟁,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총학생회는 학원 안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치와 학문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내 민주주의 가치 보전을 우선하며, 학생들의 단결을 도모한다. 밖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분단 현실의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 및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지성을 함양하고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새로운 학생회의 운영을 통해 학내 민주주의 창달과 자주적인 학생 자치의 확립을 위해 2024년 10월 2일 총학생회칙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전부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진리 탐구와 학문, 사상의 자유를 통한 올바른 대학 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성을 함양하고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이바지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의 휴학생으로 한다.
- ③ 본회의 준회원은 제5조제3항과 제5조제11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인종, 사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소속, 출신 지역 등에 의해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편찬●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저항하고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⑧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학교 운영에 대하여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 ⑨ 본회의 회원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를 위해 학교 당국의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 ⑩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본회의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 2. 대의기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 3.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4. 독립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투표관리위원회
- 5. 자치기구 :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제7조(학교 운영에의 참여) 본회는 대학의 자주화와 본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1. 학생의 자치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 2. 학생 권익과 밀접한 사항
- 3. 본교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 4. 학사 일정의 효율적 조정
-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 제2장 학생총회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권한)

- ① 학생총회는 본회 운영 전반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의결하다.
- ②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토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단, 113조의 조항에 따른다.)
- ③ 학생총회는 학생 활동에 관련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및 사전 협의권을 가진다.
- ④ 본회의 예결산, 사업계획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을 보고받는다.
- 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의장단)

- ① 학생총회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② 학생총회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총학생회장의 탄핵소추, 궐위, 유고 시 학생총회 부의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단이 이를 대신하다.

#### 제12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하지 않을 시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정기총회의 소집은 최소 회의 7일 전에는 회의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학생총회의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소집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⑥ 학생총회의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 3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중앙운영위 원회에서 이를 즉시 소집한다.
- ⑦ 학생총회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소집에 관한 근거 조항
  - 4. 학생총회 안건
- ⑧ 학생총회 시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 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의 온라인 플랫폼

2. 회원의 접근성이 높은 오프라인 게시판

# 제13조(의결)

- ① 학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개회 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장 학생총투표

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은 다룰수 없다.)

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 제16조(시행)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 1. 학생총회의장의 요구
  - 2.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
  - 3. 확대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
  -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요구
  - 5.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
- ② 학생총투표는 시행 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투표 7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긴급을 요하는 학생총투표의 경우는 시행 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④ 학생총투표 시행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투표 기간
  - 2.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
  - 3. 소집에 관한 근거 조항
  - 4. 학생총투표 안건
- ⑤ 학생총투표 시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적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의 온라인 플랫폼
  - 2. 회원의 접근성이 높은 오프라인 게시판

#### 제17조(총투표관리위워회)

- ① 학생총투표의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총투표관리위원은 투표 시행 결정일에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총투표의 원활한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을 총투표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집행위원은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제18조(투표 기간)

- ① 투표기간은 최대 3일로 하며, 세부 일정 및 기간은 총투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투표가 종료됐음에도 투표율이 2/5 미만일 경우,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기 간을 최대 하루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효력)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2/5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제20조(준용)

- ①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중앙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4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1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이외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2조(구성)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부•학과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 각 학부•학과 학년대표, 반대표 그리고 동아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전학대회를 참관할 수 있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 이외의 자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발언은 의장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 제24조(의장단)

- ① 전학대회의장단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전학대회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③ 전학대회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총학생회장의 탄핵소추, 궐위, 유고 시 전학대회부의장이 의장직을 대신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 제25조(소집)

- ① 전학대회는 정기 전학대회와 임시 전학대회를 둔다.
- ② 정기 전학대회는 각 학기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 또는 중앙운 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즉각 소집한다.)
- ④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 ⑤ 전학대회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소집에 관한 근거 조항
- ⑥ 전학대회 소집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 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의 온라인 플랫폼
  - 2. 회원의 접근성이 높은 오프라인 게시판

제26조(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칙의 수정 요구권
- 2. 총학생회칙 또는 예하 중앙세칙 개정안의 발의권 및 최종 의결권 (단, 재적의원 1/5 이상 요구 시 학생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3.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4. 학생총투표 시행 요구권
- 5. 총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증감 승인권
- 6. 본회의 예•결산에 대한 승인권
- 7. 본회의 예•결산 및 재정에 대한 감사권
- 8. 본회의 예•결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권
- 9.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 요구권
- 10.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보고서에 대한 승인권
- 11. 본회의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권
- 12.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권
- 1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의 전학대회 출석 요구 및 답변 요구권
- 14. 특별기구(위원회) 의장,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답변 요구권
- 15. 본회의 자치 활동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렴 및 사업 진행 요구권
- 16. 본회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교 당국자의 출석 요구 및 답변 요구권
- 17. 학생자치기구의 정식승인권
- 18. 전학대회 산하 특별기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권
- 19. 전학대회 산하 특별기구(위원회) 해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 20. 그 외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27조(예결산감사위원회)

- ① 전학대회 산하에 제26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결산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전학대회 대의원 중 최대 10명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당 최소 1명을 둔다.
- ③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총학생회장단
- 2.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 3. 학부•학과 학생회장
- 4. 총동아리연합회장
-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감사위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출을 완료한 후 감사위 내부에서 1 인을 호선한 뒤 전학대회에 인준을 받는다.
- ⑥ 감사위는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아 수행한다.
- 1. 본회의 예•결산 및 재정에 대한 감사권
- 2. 제26조제5호에 대한 심의 및 수정 요구권
- 3. 제26조제6호에 대한 심의 및 수정 요구권
- 4. 제26조제8호에 대한 심의 및 수정 요구권
- 5. 제26조제9호에 대한 심의 및 수정 요구권
- ⑦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감사위에 관한 사항은 [예결산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28조(법제위원회)

- ① 본회 회원의 권리 및 회칙에 명시된 가치를 보호하고, 본회 내 법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전학대회 산하에 법제위원회를 둔다.
- ② 법제위원회 위원 수는 전학대회 대의원 중 최대 8명으로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선출을 완료한다.
- ③ 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출을 완료한 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뒤 전학대회에 인준을 받는다.
- ⑤ 법제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또는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및 개정안 심의 및 수정 요구권
- 2. 총학생회칙 개정안 또는 예하 중앙세칙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총학생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에 근거한 해석에 관한 사항
- 4. 총학생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등을 담은 총학생회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5. 총학생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의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9조(책임)

- ① 전학대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은 직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의 경우 무기명투표 진행 의결없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한다.)
- ②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 ③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2. 결석 사유
-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④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불참 시 당해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대의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 다.)

# 제30조(개회 및 의결)

-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전학대회의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7조에 규정한 사항 중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소추의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발의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1조(자치내규) 전학대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학대회 자치내규에

따른다.

# 제 5 장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 (이하 "확운위"라 한다)는 본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학대회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 운영기구이다.

**제33조(구성)** 확대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부•학과 학생회장, 총동 아리연합회장, 동아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제34조(의장단)

- ① 확운위의장단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확운위를 대표한다.
- ② 확운위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③ 확운위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총학생회장의 탄핵소추, 궐위, 유고 시 확운위 부의 장이 의장직을 대신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 제35조(소집)

- ① 확운위는 정기 확운위와 임시 확운위를 둔다.
- ② 정기 확운위는 매월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확운위의 소집은 확대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즉시 소집한다.)
- ④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 ⑤ 전학대회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소집에 관한 근거 조항

제36조(업무 및 권한) 확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 사업계획안 및 보고서를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단, 전학대회의 무산으로 인한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 2. 임시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및 임시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 3.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권
- 4.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위원회) 해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 5.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
- 6. 총학생회칙 또는 예하 중앙세칙 개정안의 발의권
- 7.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 인준 및 해임 의결권
- 8.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의 업무 심의권
- 9.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학교 행정에 대한 심의 및 개정 요구권
- 10. 그 외 전학대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거나 확운위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37조(책임)

- ① 확운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은 직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 해임의결의 경우 무기명투표 진행 의결 없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한다.)
- ② 확대운영위원이 확운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명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확대운영 위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 ③ 확대운영위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2. 결석 사유
-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④ 확대운영위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 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무단 불참 시 당해 확대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확대운영위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서 한다.)

#### 제38조(개회 및 의결)

- ① 확운위는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확운위의 의결은 출석한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5조에 규정한 사항 중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의 해임의결은 출석한 확대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39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40조(구성) 중앙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이나 특별기구 위원장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참관할 수 있다.)

## 제41조(의장단)

- ① 중운위의장단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중운위를 대표한다.
- ② 중운위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③ 중운위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총학생회장의 탄핵소추, 궐위, 유고 시 확운위 부의 장이 의장직을 대신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중운위에서 자체 선출된 임시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 제42조(소집)

- ① 중운위는 정기 중운위와 임시 중운위를 둔다.
- ② 정기 중운위는 매주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중운위에서 정한다.
- ③ 임시 중운위는 의장이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43조(업무 및 권한) 중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사업 보고
- 2.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 3. 총학생회의 예, 결산을 편성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 4. 총학생회의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 5. 본회의 사업 및 업무를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전학대회, 확운위에 상정
- 6. 확운위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 요구권 (단,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를 필하며, 1회에 한한다.)
- 7. 임시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임시 전학대회의 소집 요구권
- 8.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학교 행정에 관한 심의 및 개정 요구권
- 9. 본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안건을 확운위, 전학대회 에 상정 및 의결
- 10. 필요시 중운위 산하 특별기구(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안건을 상정 및 의결
- 11. 당해 연도 선거 일정에 관한 의결권
- 12. 본회 규칙 및 규정 재정●개정●폐지에 관한 심의, 의결권
- 13. 전학대회나 확운위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
- 14. 기타 중운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 제44조(책임)

① 중운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은 직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이 중운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명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중앙운영 위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 ③ 중앙운영위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2. 결석 사유
  -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④ 중앙운영위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당해 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중앙운영의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결정은 중운위에서 한다.) 제45조(개회 및 의결)
  - ① 중운위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중운위의 의결은 출석한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중운위 의장 또는 출석한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이 본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장 총학생회장단

# 제46조(지위 및 책임)

-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 의 회의에 학생 대표로서 참석한다.
- ③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과 원만한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
- ④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회의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한다.
-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47조(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매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선인' 신분이며, 해당 신분의 기간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단,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는 '당선인' 기간 없이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 제48조(연임 금지)

- ① 총학생회장은 차기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차기 총학생회 선거에서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 제49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집행위원장과 각 국(부)장을 추천하여 확운위의 인준을 거쳐 임명 및 해임
-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
- 3.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운위, 중운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
- 4. 본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및 결산 보고를 중운위와 확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 상정
- 5. 총학생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개정 발의권
- 6. 대외적인 활동에 관한 대표권
- 7. 필요시 전학대회, 확운위, 중운위의 동의를 얻어 특별기구(위원회) 설치 요구권
- 8.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운위, 중운위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 9. 그 외 총학생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

# 제50조(사퇴)

- ①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운위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할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위를 대행한다.

- ③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할 경우 그 직위는 공석으로 둔다.
- ④ 총학생회장단이 동시에 사퇴한 경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공고하고 6주 이내에 보궐선 거를 시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제51조(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본 회칙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 ④ 전학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발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총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10일 이내에 임시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⑤ 전학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⑥ 본조 제3항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⑦ 총학생회장만 탄핵당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위를 대행한다.
- ⑧ 부총학생회장만 탄핵당한 경우 그 직위는 공석으로 둔다.
- ⑨ 총학생회장단이 동시에 탄핵당한 경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공고하고 6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비 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제 8장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제52조(지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3조(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부)의 국(부)장 그리고 각 국(부) 별 산하에 부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와 집행에 관해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부)서를 관리•감독하도록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장(이하 중앙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 중 1명으로 한다.
- ③ 선거 무산 등의 이유로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4조(임기) 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 제55조(업무 및 권한)

- 1.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2. 전학대회 및 확운위, 중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4. 일체의 사업계획안과 사업보고서, 예산편성, 사업평가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학대회 및 확운위, 중운위에 보고한다.
- 5.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원은 제54조에 따라 임기 시작일에 업무를 개시하고, 확운위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
- 6. 전학대회, 확운위, 중운위 개회•시행을 준비한다.

#### 제56조(사퇴 및 해임)

- ①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원은 소정 양식의 사퇴서를 총학생회장단에 제출함으로써 사퇴한 것으로 본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국(부)장의 해임 의결은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 제 9 장 비상대책위원회

## 제57조(지위 및 책임)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궐위 시 그 기간 동안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대행 집행기구이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 1.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제7장제46조에 준하는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 2. 비상대책위원은 제6장제39조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 3.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제8장제52조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 제58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 2.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인 경우
- 3.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인 경우
- 4. 총학생회장단이 그 밖의 사유로 유고 또는 궐위된 경우

# 제59조(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의 유고 또는 궐위 시 당해 중운위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7일 이내에 선출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 1. 당해 중앙운영위원인 자
  - 2. 6개월 이상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당해 중앙운영위원 중 3명 이상 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본조 1항에 따라 선출된 즉시 업무를 개시하고, 확운위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

#### 제60조(비상대책위워)

① 비상대책위원은 당해 모든 중앙운영위원이 겸임한다.

#### 제61조(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은 아래 각 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다.
  - 1.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 비상대책위원은 각 소속 단위에서 1명 이상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2.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
  - 3. 그 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2조(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위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집행 사안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진행해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제63조(해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면 해산한다.

# 제10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64조(명칭)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이하, 단대학생회)라 칭한다.

제65조(지위) 각 단대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들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66조(구성) 각 단대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업무 및 권한)** 각 단대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 하며 각 학부●학과 학생회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화합을 도모한다.

# 제68조(단과대학 학생회장단)

- ①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대학생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대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 및 중 앙운영위원이 된다.

제69조(회칙) 단대학생회는 해당 단대학생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 회칙에 준하여 자체의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단, 자체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제70조(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단과대학 정●부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혹은 궐위, 유고 시 단대학생회의 직위와 책임에 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제11장 학부●학과 학생회

제71조(명칭) 학부●학과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72조(지위) 각 학부●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학과 학생들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73조(구성) 각 학부●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학과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업무 및 권한) 학부●학과 학생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제75조(학부•학과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학과 학생회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학부·학과 학생회장은 각 학부·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전학대회 대의원 및 확대운 영위원이 된다.

제76조(회칙) 학부●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학과 학생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 회칙에 준하여 자체의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단, 자체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제77조(학부●학과 비상대책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혹은 궐위, 유고시 학부●학과 학생회의 직위와 책임에 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 다.

# 제12장 총동아리연합회

제78조(명칭 및 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라 칭하며, 본회의 전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

제79조(구성) 총동연은 총동연에 등록된 동아리 전체로 구성하며, 분과장을 둔다.

제80조(업무 및 권한) 총동연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81조(회장 및 부회장)

- ① 총동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본회 회칙에 준하여 자체 회칙에 따른다.
- ② 총동연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총동연 회장은 총동연을 대표하여 본회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 및 중앙운영위 원이 된다.
- ③ 총동연 회장은 본인의 부재 시 부회장에게 2항의 회의의 참가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분과장) 자체 회칙에 의거하여 임명된 분과장은 동아리의 분과를 대표하여 확운위에 참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83조(재정) 총동연의 재정은 자율적학생경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예결산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84조(회칙) 총동연은 개별 동아리의 이익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자체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자체 회칙에 따른다.

# 제13장 졸업준비위원회

제85조(구성)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각 학부●학과 4학년 대표 1명씩으로 구성한다. 제86조(위원장)

- ①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준위장)은 자체 호선한다.
- ② 졸준위장은 졸준위를 대표하여 전학대회에 참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87조 (업무 및 권한) 졸준위는 졸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8조 (재정) 졸준위의 재정은 각 학부•학과 4학년의 졸업준비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전학대회의 감사를 받는다.

# 제14장 재정

# 제89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자율적학생경비, 그 이자, 기타 수입금 및 보조금으로 집행한다.
- ② 총학생회비의 인출 거부 및 증감은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확정한다.
- ③ 자율적학생경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운위 의결을 통해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자율적학생경비의 인준 및 집행은 각 자치기구장의 결재에 의한다.
- ⑤ 자율적학생경비의 분배율에 대해서는 지분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90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전 항의 회계연도는 학기별 2기로 나누어 각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행한다.

## 제91조(회계책임)

① 본회 회계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총학생회장이 되며 중앙사무국(부)장은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 회계를 관리한다.

# 제92조(예산안)

- ① 본회의 예산안은 본회의 각 기구에서 사업계획 편성안을 예결산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전학대회에서 확정한다.
- ② 예산안은 전학대회 7일 전까지 총학생회장이 공고한 후 예결산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임기 중 2학기 회기에 예산 중 3%는 차 회기로 이월해야 한다.

# 제93조(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 ①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의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본 회칙이 정한 기간 내에 전학대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② 예산 수립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 승인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결산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예산안에 부합되게 행하며 각 행사 종료 시는 증빙 서류를 첨부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95조(결산보고)

- ① 결산보고는 학기별로 구분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본회의 각 기구에서 작성하여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③ 전학대회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감사) 전학대회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제15장 사무장회의 및 지분회의

## 제97조(정의)

- ① 사무장회의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 ② 지분회의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율 적학생경비의 분배를 논의하는 회의이다.

# 제98조(구성)

- ① 사무장회의는 중앙사무국(부)장, 각 단과대학 사무장, 총동아리연합회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 ② 지분회의는 중앙사무국(부)장, 각 단과대학 사무장, 총동아리연합회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 제99조(논의사항)

- ① 사무장회의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율적 학생경비의 분배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② 지분회의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율 적학생경비의 분배에 대해 논의한다.
- ③ 사무장회의 및 지분회의의 구성원의 논의로 결정된 사항은 독립성을 가진다.

#### 제100조(의장)

- ① 사무장회의의 의장은 중앙사무국(부)장이 한다.
- ② 지분회의의 의장은 중앙사무국(부)장이 한다.

#### 제101조(소집)

- ① 사무장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요구하며 해당 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사무장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안건을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분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요구하며 해당 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지분회의의 소집은 총학생회비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2조(자율적학생경비의 활용)

①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는 분배된 자율적학생경비를 소속된 학생복지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3조(회의록)

- ① 사무장회의 및 지분회의의 회의록은 의장이 보관하며, 본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와 함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서기는 회의록 작성 만을 하여야 한다.

# 제104조(기타)

① 회칙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 내규에 따른다.

# 제16장 선거

제105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선거권을 가진다.

# 제106조(피선거권)

- ①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각 호에 따른다.
  - 1.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 (단, 휴학 중인 자는 다음 학기 복학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 미이행 시에는 당선을 취소한다.)
  - 2. 본회의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10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실시한다.

## 제108조(선거 시기)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년도 11월 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각 자치기구의 선거는 각 자치기구의 회칙에 준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는 당해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적정시기에 시행한다.

# 제109조(재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유고 시에는 그 잔여 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해 선거가 후보자가 없어 무산되거나 총학생회장단의 당선이 특별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의 잔여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는 제9 장을 따른다.
- ④ 기타 각 자치기구의 재보궐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 제11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본회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전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로, 독자적인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③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학대회 의장은 최소 투표 시작일 3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명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권은 중운위가 갖는다.
- ⑤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집행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권을 가 지지 않는다.)

### 제111조(준용)

- ①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중앙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2조(기타) 기타 선거에 따른 세부 사항은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시행세칙 및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 제17장 법제

## 제113조(체계)

- ① 본회의 법제 체계는 학생회칙, 시행세칙, 규칙, 규정 순으로 구성된다.
- ② 본회의 특별기구, 독립기구, 자치기구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은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회칙에 따른다.

# 제114조(발의)

- ① 본 회칙의 개정안 발의는 각 호에 따라 할 수 있다.
  - 1. 본회 재적회원 1/10 이상의 발의
  - 2. 전학대회 대의워 1/5 이상의 발의
  - 3. 총학생회장의 발의
  - 4.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 5. 확대운영위원 1/4 이상의 발의

## 제115조(공고)

- ①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 발의 시 전학대회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 또는 제출 기구

#### 제116조(의결)

- ① 전학대회 법제위원장은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전학대회 법제위원회를 소집한 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제정안 혹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및 수정 요구를 진행해야 한다.
- ② 전학대회 법제위원회에서 심의 및 수정 요구를 마친 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학 대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단,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발의 또는 확운위 재적인원 1/4 이상 발의 시 학생총회에서 확정한다.)
- ③ 회칙개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7조(정리)

①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및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중운위는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공포)

①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학대회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 ②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공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 발의자 명단 또는 제출 기구
- ③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 공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공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포를 진행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의 온라인 플랫폼
- 2. 총학생회 오프라인 게시판

제119조(효력) 회칙 및 예하 중앙세칙 제정안 혹은 개정안의 효력이 시행되는 일자를 각 부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칙에 명시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0조(기타) 규정과 규칙의 개정은 중운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 부칙

**제1조(시행)** 본 개정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제4장제27조 및 제4장제28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